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 199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 ('99.1.18. 법률 제5,634호, '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함.

###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 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개정근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99. 1. 18.법률제5634호 : '99. 4. 19. 시행)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규칙상의행정규제정비 추진 지시('99. 5. 11.교육부)

조 례 안 : 불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불임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를 “영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정원)”을“(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반당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며, 제2항의 단서중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횟수)”를“(학원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05:00부터 22:00까지”를 “05: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채용할 때에는”을 “채용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중 “충청북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 표 1 ]

## 학원의 시설규모

분 야	개 열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직업기술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 계열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 교습과정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국제실무	외 국 어	어학, 통역, 번역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성인고시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사무관리	부기, 속독, 속셈, 경리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속기,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펜글씨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예 능	예 능	응변, 화술	강의실 연면적 60㎡이상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에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입시·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 이상, 기타지역 150㎡이상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 이상, 기타지역 60㎡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연면적 90㎡이상
독서실	독서실		· 열람실 연면적 :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60㎡이상	

**[비고]**

1. 시지역중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 별 표2 ]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1. 기 계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1,자동차 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 동 차 (2-2,중기운 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운전실습장 990㎡ 이상 (3) 기재실 16.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4) 배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3,중기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1대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럭, 전기용접기,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7) 작업대 8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4,자동차 운전)	가. 시 설 (1) 강의실 66㎡ 이상 (2) 정비장 66㎡ 이상 (3) 주차시설 75㎡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상이어야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m <sup>2</sup> 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화	공	및	가. 시	설									
					세	라	믹	(1) 실습실 60m <sup>2</sup> 이상										
								(2) 기재실 15m <sup>2</sup>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전	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m <sup>2</sup> 이상										
								(2) 전기실 3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	자		가. 시	설									
								(1) 실습실 60m <sup>2</sup> 이상										
								(2) 기재실 15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2) 텔레비전과정 (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교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기기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항 공 (항공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교정의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2) 엔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토목, 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의복·섬유 (8-1, 양재·한복)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의복·섬유 (8-2, 수예·자수)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9. 농 림 (동물)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환 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닛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입축기 각 2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1,공예·도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공 예 (11-2,귀금속가공·보석감정)	가. 사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 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세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2대 이상 (다) 광택기 2대 이상 (라) 전기로 2대 이상 (마) 사출기 5대 이상 (바) 원심주조기 2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사) 흡입주조기 2대 이상 (아) 고무모형 압착 2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안전관리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응용 기술		13. 디자인 (13-1,패션디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디자인 (13-2,산업디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샤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이·미용 (14-1,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꺾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의자,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중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이·미용 (14-2,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깡,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15. 식음료품 (15-1,조리)	가. 시 설 (1) 조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250ℓ 이상) 2대 이상 (3) 환풍기 2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식음료품 (15-2,제과 제빵)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시청각교구 세트(TV, VIR, 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 (3) 오븐(LPG 또는 전기)2장 용량1대 이상 (4) 수평반죽기 중형 2대이상 (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 (6) 추저울(5kg) 6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이상 (9) 토라(Dough Sheeter)1대 이상 (10) 냉장고(1000ℓ ) 1대 이상 (11)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썬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15.	식	음	료	<p>가. 시 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진열대 4대 이상</p> <p>(2) 조주대 4대 이상</p> <p>(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p> <p>(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6.	인	쇄		<p>가. 시 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인쇄기 2종 이상</p> <p>(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7.	사	진		<p>가. 시 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2) 암실 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사진기 3종 이상</p> <p>(2) 확대기 2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8.	피아노	조	조	<p>가. 시 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정음작업대 4대 이상</p> <p>(2) 조율튜너, 튜링햄머 각 4대 이상</p> <p>(3) 스테이시, 스폰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p> <p>(4) 피아노 4대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정보처리 기 술	19. 통신기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정보처리)	20. 정보통신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PU 586 156MHZ급 이상, M/M 16MB 이상, HDD 1.6GB 이상의 컴퓨터 1대 이상 (2) 위 “ (1) ”호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32Bit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7)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컴 퓨 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일시수용 인원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간호보조 가 슬	22. 간 호 조 무 사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채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셀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관광	23. 영상·음반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더빙용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24. 관 광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및 교 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 영 실 무	사 무 관 리			25. 워 드 프 로 세 스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및 교 구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주 산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및 교 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예 능	예 능			27. 무 용, 전 통 무 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 비 및 교 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서 예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및 교 구 (1) 베틀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음	악		가. 시 설	(1) 음악실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미	술		가. 시 설	(1) 실습실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베틀,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모	델,		가. 시 설	(1) 실기실 60m <sup>2</sup> 이상								
					연	극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32. 바둑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꽃기예, 꽃꽂이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래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34. 독서실	가. 시설 (1) 열람실 · 시 지역 120㎡ 이상 · 기타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cm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별 표3 ]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1. 기 계	40	실습실 60㎡기준
		2. 자동차		
		· 자동차정비	40	실습실 60㎡기준
		· 중기운전	30	실습실 990㎡기준
		· 중기정비	30	실습실 45㎡기준
		· 자동차운전	기능교습장 면적및기능 코스규모에 따라 산정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만당해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300㎡ 당 1인이내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당 2인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 치 자전거반: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 면적 50㎡당 1인
		3. 화공및세라믹	40	실습실 45㎡기준
		4. 전 기	40	실습실 45㎡기준
		5. 전 자	40	실습실 45㎡기준
		6. 향 공(항공정비)	30	실습실 60㎡기준
		7. 토목, 건축	20	실습실 45㎡기준
		8. 의복· 섬유		
· 양재· 한복	30	실습실 45㎡기준		
· 수예· 자수	30	실습실 45㎡기준		
9. 농림(동물)	20	실습실 45㎡기준		
10. 환경(냉동, 열관리, 냉난방)	40	실습실 45㎡기준		
11. 공 예				
· 공예· 도예	30	실습실 45㎡기준		
·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30	실습실 45㎡기준		
12. 안전관리	40	실습실 45㎡기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산업응용기술	13. 디 자 인			
		· 패션디자인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14. 이 · 미 용			
		· 미 용	2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 이 용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15. 식음료품			
		· 조 리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 제과 · 제빵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 조 주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16. 인 쇄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17. 사 진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18. 피아노조율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정보처리기술	19. 통신기기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1. 컴 퓨 터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간호보조기술	22. 간호조무사	40	실습실 60m <sup>2</sup> 기준
		문화관광	23. 영상 · 음반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4. 관 광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경영실무	사무관리	25. 워드프로세스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6. 주 산	4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예 능	예 능	27. 무용, 전통무용	2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8. 서 예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29. 음악(피아노)	20(12)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30. 미 술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31. 모델, 연극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32. 바 둑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33. 꽃기예, 꽃꽂이	30	실습실 45m <sup>2</sup> 기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시설기준) ①(생략)</p> <p>②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③~⑤ (생략)</p>	<p>제2조(시설기준)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영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p> <p>③~⑤(현행과 같음)</p>	<p>유사교습과정 등록을 명확히 함</p>
<p>제3조(정원)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의 반당정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① ----- ----- 일시수용능력인원 ----- -----</p> <p>② ----- 일시수용능력인원은 -----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 -----</p>	<p>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p> <p>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내용정비</p>
<p>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 교습횟수)</p> <p>①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① ----- ----- 05:00부터 23:00까지 -----</p>	<p>위임근거법령 폐지(영 제10조 제2항) 및 재학생 학원교습시간 1시간 연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시간이내 교습과정 : 12부제이하(단, 자동차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li> <li>2. 2시간 이내 교습과정 : 6부제 이하</li> <li>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li> <li>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li> <li>5. 4시간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li> <li>6. 종합반(입시 및 점정고시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만, 종합반 교습이 끝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li> </ol>	<p>② &lt;삭 제&gt;</p>	<p>위임근거법령 폐지(영 제10조 제2항)</p>
<p>제5조(교습소 부제 교습횟수)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는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li> <li>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li> <li>3. 3시간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li> <li>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li> </ol>	<p>제5조 &lt;삭 제&gt;</p>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16조 제2항)</p>
<p>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원과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li> </ol>	<p>제6조 &lt;삭 제&gt;</p>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4조 제3항 제2호)</p>

현행	개정(안)	비고
<p>2. 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보고</u>)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u>보고</u>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통보</u>) ① - ----- ----- 채용한 때에는 ----- ----- 통보 - -----</p> <p>② ----- <u>통보</u> - ----- 10일 이내 ----- <u>통보</u> - -----</p>	<p>규제완화</p> <p>규제완화</p>
<p>제8조(수강료등) ①(생략)</p> <p>②<u>통보</u>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8조(수강료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u>삭제</u></p>	<p>규제완화</p>
<p><u>신설</u></p>	<p>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p>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p><u>신설</u></p>	<p>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p>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충청북도교육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 ----- <u>교육규칙</u> ----- -----</p>	

현행	개정 (안)	비고
	<p>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99. 1. 18, 법률 제5634호)

연번	주요 개정 내용	비고
1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 제한 삭제(제3조제2호 후단)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2	○ 학원의 재개원, 교습소의 재개소 신고 삭제 (제10조 및 제14조제4항)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연번	주요 개정 내용	비고
1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제한 완화(제4조제3항)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삭제	
2	○ 학원의 계열 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제7조의 2) - 교습과정의 분야, 계열 재분류 :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참조 -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 학원 단위시설 기준 완화(제8조 및 제9조) : 필수시설인 사무실(10㎡이상) 및 양호실(7㎡이상), 휴게실(15㎡ 이상)을 권장시설로 변경	
4	○ 학원 및 교습소 부제교습횟수 제한 폐지(제10조 및 제16조)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학원 및 교습소 부제 교습횟수를 폐지	
5	○ 학원강사 자격완화(제12조제3항 삭제 및 별표 2) :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강사의 자격을 완화함.	
6	○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만 (30㎡이내) 제한 폐지(제16조제1항제3호) :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을 3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한 면적 제한 삭제	
7	○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8조) :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시기 및 반환금액의 세부규정을 정함.	

# 관계법령 발췌서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99. 1. 18, 법률제5634호)

제3조(과의교습) 누구든지과의교습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점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후단삭제 : 이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재개원 또는 폐원)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삭제:재개소 또는 폐소)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99. 5. 10, 대통령령제16294호)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개정전>

③법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생략)
2.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삭제)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원시설)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 2 ~ 6. (생략)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4. (삭제 : 사무실 :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5 ~ 7. (생략)
8. (삭제 : 휴게실 : 1일 수강자 500인(독서실의 경우에는 1일 이용자 50일)이상인 학원에 두되, 휴식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9. (삭제 : 양호실 : 1일 수강자 또는 이용자 500인 이상인 학원에 두되, 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7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삭제>

<개정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부제교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제교습횟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한다.

제11조<삭제>

<개정전>  
 제11조(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전임강사가 20인 이상인 학원  
 2. 일시수용능력이 500인 이상인 학원

제12조(강사) ②법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③<삭제>

<개정전>

③강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표시과목, 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사회교육법 ('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별표 1]

##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펜들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에
입시·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 [별표 2]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학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li> <li>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li> <li>5. - 9.(생략)</li> </ol>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1999-86 호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 제2항 별표)</li> <li>○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li> <li>○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li> <li>○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li> <li>○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li> <li>○ 학원 수강료의 1년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8조 제2항)</li> <li>○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 (안 제10조)</li> <li>○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조항 신설 (안 제11조)</li> </ul>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p>	<p>○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항)</p> <p>○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제1항)</p> <p>○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p>	<p>○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p> <p>○ 이월사업비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수해복구지원비 31,95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p>



“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편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1) 272-0414/ 전송 (0431)271-8696  
 의사과장 : 안용균 / 의안담당 : 연승흠 / 기안자 :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263

시행일자 1999.08.28. (영구)

경유

발음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9. 08. 28	결 재 · 공 람	
	번호	41282		
처 리 과	기 획 관 리 과			
담 당 자				

제목 의안이송

1. 기관 81433-710('99.8.12)호의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104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4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원안가결
104 -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